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지방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선거사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투·개표 등 장시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의무적으로 휴무를 부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공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,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7. ~ 3. 15.)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,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선거사무 종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공직선거법」 제146조의2제2항에 따른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
2. 「공직선거법」 제147조제9항 및 같은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
3. 「공직선거법」 제174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원

②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휴무에 1일을 더하여 부여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선거사무 종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1. 「공직선거법」 제146조의2 제2항에 따른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</u> <u>2. 「공직선거법」 제147조제9항 및 같은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</u> <u>3. 「공직선거법」 제174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원</u> <u>②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휴무에 1일을 더하여 부여한다.</u>
<u>제4조의2 (생 략)</u>	<u>제4조의3 (현행 제4조의2와 같음)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7